##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20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김정호·허종식·최기상

김동아 • 이연희 • 이훈기

강득구・박 정・박해철

전진숙 • 박희승 • 조계원

윤후덕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등).

법률 제 호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인 모든 공직자는 해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해외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취업심사대상자가"를 "취업심사대상자나 퇴직공직자가"로, "단서에"를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를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단서에"를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제1항에"를 "제17조제1항 및 같 은 조 제10항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단서에"를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을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0항, 제1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 ⑨ (생 략)	① ~ ⑨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
	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방위
	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
	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인 모
	든 공직자는 해외기관에 취업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공직자
	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
	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해외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
	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u>있다.</u>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승인) ① <u>취업심사대상자</u>
<u>가</u> 제17조제1항 <u>단서에</u> 따라	<u>나 퇴직공직자가</u> <u>단서 및</u>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u>같은 조 제10항 단서에</u>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	
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	

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 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생 략)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u>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u>
단서에
· ③ (현행과 같음)
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 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7조제1항 <u>단서에</u> 따라 취업하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1. (현행과 같음)
2단서 및 같은 조
<u>제10항 단서에</u>
② (현행과 같음)
(3)
<u>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u>
<u>0항에</u>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지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 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 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 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 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 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 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 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 ② (생략)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지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u>제17조제1항을</u> 위반하여 취 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세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u>단서 및</u>
같은 조 제10항에
 ② (현행과 같음)
에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1.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         0항을

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